

대구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가단1300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22. 5. 2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2. 5. 26. 접수 제620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2. 5. 26. 접수 제620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D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후 D을 상대로 원리금 합계 12,031,997원(= 2,590,565원 + 4,708,944원 + 4,732,488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2006.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6. 12. 22.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91897).

나. 피고들, D, E은 모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2. 4. 6. 사망하자 2022. 5.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B는 2022. 5.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누나인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D는 이 사건 협의 당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반면 위 가항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협의 성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B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는 D에게 위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를 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민

별지목록

1. 대구광역시 등구 대 147.4 m²

2. 위 지상

세면벽돌조 와즙 2층건주벽

1층 건평 22 평 4 휴 2 작

외 2층 10 평

외 지하 5 평 7 휴 2 작

세면벽돌조 옥즙

평가전창고

건평 6 휴

이상 소유자 ,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끝.

